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55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조례 내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이 '2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세 감면 조항의 적용기한을 '27. 12. 31.까지 3년 연장(안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4. 8. 16. ~ 2024. 9. 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 (☎ 02-2133-3355)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의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를 “따른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복감면의 배제)”를 “(중복 특례의 배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를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법령 및 이 조례 등”으로,

“감면규정”을 “지방세 특례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생략)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

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

----- 2027년 12월 31일 -----

② -----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건축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8호에 따른 권장업종시설(이하 이 조에서 "권장업종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건축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권장업종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
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
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
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 2027년
12월 31일-----.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
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

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 (생략)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략)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

----- 2027년 12월 31일-----

-----.

-----.

1. 2. (현행과 같음)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

----- 2027년 12월 31일-----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항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정한다.

1.·2. (생략)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1.·2. (생략)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

----- 2027년 12월 31일-----.

1.·2. (현행과 같음)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1.·2.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기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조항의 감면 적용기간에 대한 연장으로 추가적인 세입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2133-3355)